

## 조선시대의 첨과 서녀

이숙인\*\*

제도·담론·자기인식\*

**초록** 조선사회에서 첨과 서녀는 가족의 일원이지만 그 가족의 계보와 권리에서는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존재다. 그들은 그 시대 차별 기제와 차별화의 논리를 몸으로 보여준다. 양반가의 경우, 첨이 낳은 딸이 서녀가 되고 서녀는 다시 첨이 되는 순환구조에서 아내로서의 첨과 딸로서의 서녀는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다. 첨은 다시 양첨과 천첨으로 구분되는데, 소생 자녀는 서자녀와 열자녀로 나뉜다. 본 연구는 두 신분의 첨에서 가족적 유대가 비교적 강한 양첨에 주목하였다.

가족과 신분이 중충으로 얹혀 있으면서 여성 삶의 한 유형이기도 했던 첨을 통시적으로 조명하되 각 시기별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조선초기는 신유학에 의한 종법적 가족 사상이 국가 이념과 만나면서 혼인 가족과 관련된 제도와 이념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첨의 제도화도 그 일환이었다. 다시 말해 첨도 신유학의 가족 이념으로 재편되고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처첩제의 문화적 기원과 제도화 그리고 처첩분간을 위한 쟁송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선전기 첨 담론의 특징을 밝혀내었다.

처첩분간이 일단락되는 16세기 이후의 첨 담론은 예학과 만나면서 첨에게 부여된 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즉 조선후기의 예설(禮說)은 기존의 예법서를 수용하면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여기서 첨 및 첨자(妾子)의 예학적 위치가 마련된다. 첨의 실상과 그 삶의 양상을 보기 위해 구체적 가족 속으로 들어가 양반가에서 첨을 두는 목적 또는 유형에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주변적 존재로서 첨과 서녀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할까. 서녀의 경우는 첨으로 가는 과정적 존재로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과편적인 기록을 모아 첨과 서녀의 자기 인식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가족의 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249).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었던 처첩문제가 소생 자녀의 신분을 규정하며 사회로, 국가로 확대되어 간 서열차별 대우의 기원과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주제어 첨, 서녀, 조선시대, 제도, 담론, 예학

## 1. 가족의 주변인, 첨과 서녀

조선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신분이든 그 신분 내 남성의 주변인으로 배치되었다. 여필종부(女必從夫)나 남존여비(男尊女卑)라는 유교적 언어들이 제도와 이념에 반영된 것이다. 가족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여자는 한 남편을 두지만 남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 여러 명의 아내에서 처(妻)는 1인이고 나머지 아내는 첨(妾)이 되었다. 일처(一妻) 외에 1인 이상의 첨(妾)을 승인하는 것은 일부일처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다처(一夫多妻)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일처제라는 혼인 원칙은 아내[妻]된 자의 의무이지 남편[夫]된 자의 의무는 아니다.

남편과 처첩으로 이루어진 유교 가족에서 남편은 둘 이상의 아내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다. 처첩(妻妾)으로 병칭되는 아내들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하는 자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그래도 처는 부부일체라 하여 명분상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첨의 경우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첨의 위치는 남편은 물론 남편의 처에게도 종속되어 있다.<sup>2</sup> 그런데 애정과 의무의 동시 충족이라는 부부

1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夫者, 妻之天也. 『儀禮』「喪服傳」) “남편은 아내의 근본이 다.”(夫爲婦綱. 『春秋繁露』)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첨을 副室, 側室, 小室이라고 한 것은 正室을 보조하거나 주변에 위치하며 大小와 같은 집단 내의 서열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첨이 남편을 ‘君’으로, 처를 ‘女君’으로 칭한 것은 신하와 임금의 위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김장생, 『가례집람』「상례」).

의 원론적 정의에서 볼 때 처 역시 애정적으로 늘 첨과 경쟁하는 위치에 놓인다. 즉 처와 첨이라는 두 부류의 아내를 동시에 인정하는 제도에서는 어떤 여성이든 원천적인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

유교사회에서 첨과 서녀는 가족의 일원이지만 그 가족의 계보와 권리에서는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존재다. 그런 점에서 첨과 서녀는 조선사회의 차별 기제와 차별화의 논리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특히 양반가의 경우, 첨이 낳은 딸이 서녀가 되고 서녀는 다시 첨이 되는 순환구조에서 아내로서의 첨과 딸로서의 서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그들은 가족 안에서 보면 가족 밖의 사람이고, 가족 밖에서 보면 가족 안의 사람이다. 즉 가족의 경계인 또는 주변화된 가족이다. 첨에는 양인이나 양반 신분의 양첨(良妾)과 기생이나 여비(女婢)에서 나온 천첨(僕妾)이 있는데, 그에 따라 첨 내부는 다시 위계화된다. 첨이 낳은 자녀 또한 서자녀 또는 열자녀로 구분된다.<sup>3</sup> 천첨과 열자녀의 경우는 신분제도와 함께 규명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가족의 범주에서 다루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양첨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가족과 신분이 중층으로 얹혀 있는 여성 존재로, 조선시대 여성 삶의 한 유형이었던 첨을 통시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조선초기는 신유학에 의한 종법적 가족 사상이 조선의 건국 이념과 만나면서 혼인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첨 제도의 마련도 그 일환이었다. 여러 아내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 가부장적 권력의 소산이라면 그녀들을 분류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은 문화마다 다를 것인데, 조선은 신유학의 가족 이념으로 재편되고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처첩제의 문화적 기원과 제도화 그리고 처첩분간을 위한 쟁송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선전기 첨 담론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이다.

---

<sup>3</sup> 첨 소생의 자녀들은庶子 또는孽子,庶女 또는孽女라 하여 그 출신 성분을 밝힌 것에 반해 처의 소생은嫡子,嫡女라 하지 않고子,女로 칭한다.

처첩분간이 일단락되는 16세기 이후의 조선사회는 첨으로서의 위치와 의무를 습득하는, 이른바 심화 단계로 접어드는데 그 역할을 예학이 담당한다. 조선후기의 예설(禮說)은 기존의 예법서인 『의례』(儀禮)와 그에 기초한 『대명률』 및 『경국대전』 등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첨 및 첨자(妾子)의 예학적 위치와 담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첨의 실상과 그 삶의 양상을 보기 위해 구체적 가족 속으로 들어 가는데, 여기서 양반 사대부가 남긴 기록을 활용할 것이다. 양반 남성이 첨을 두는 목적은 대체로 생자(生子), 가사(家事), 종욕(縱欲)이라는 3유형이다. 첨의 예적 담론과 첨의 유형 등에 주목하여 4장과 5장으로 구성될 것이다.

가족이지만 제도와 이념에 의해 주변화된 서녀와 첨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할까. 서녀의 경우는 제도나 이념 등의 공식적인 위치에서 포착되기보다 첨으로 가는 과정적 존재로 언급되는 정도다. 서녀로 태어나 성장하여 혼인에 이르는 과정의 과편적인 기록을 통해 그녀들의 자기 인식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첨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 소생인 서열(庶孽)을 중심으로 가족사, 사회사, 법제사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폐미니즘의 시각으로 첨과 서녀를 규명한 시도가 있었다.<sup>4</sup>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선시대 첨 또는 처첩 담론의 기원과 역사에 주목하였다.

---

4 첨 관련 초기 연구로는 李相伯(1934), 「庶孽差待의 淵源에 대한 一問題」, 『震檀學報』 1; 김두현(1969),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등의 ‘庶孽差待考’가 있고, 첨을 전면에 내세운 연구로는 배재홍(1990), 「朝鮮時代 妻子女의 財產相續과 存在樣態」, 『梨花史學研究』 27; 조지만(2016), 「『大明律』상 범죄와 형벌의 비례: 처첩을 중심으로 한 변형」, 『法史學研究』 53호; 박경(2000), 「朝鮮前期 妻妾秩序 確立에 관한 考察」, 『梨花史學研究』 27; 정지영(2009), 「조선시대 첨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법전류의 첨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고전여성문화연구』 19; 김경미(2007), 「서녀: 가족 속의 경계인, 역사 속의 주변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등이 있다.

## 2. 처첩의 이념과 제도화

조선 건국의 설계자들은 신유학적 가족 개념에 따라 처첩(妻妾) 및 적서(嫡庶)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처와 첨 그리고 그 소생들 사이에 일종의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5</sup> 그것은 대倫(大倫)을 밝히고 가도(家道)를 바루기 위한 방법이었다.<sup>6</sup> 이러한 맥락에서 사헌부는 “적첩(嫡妾)의 분수를 세울 것을 상소”하는데, 조선 건국 20여 년 만의 일이다.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니 적첩의 분수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고려 말에 예의(禮義)의 교화가 실행되지 못해 부부의 의리가 문란해지기 시작하여, 경(卿)·대부(大夫)·사(士) 등이 오직 제 육십만을 쫓고 애정에 혹 하여 처가 있는데도 처를 얻는 자가 있고, 첨으로써 처를 삼는 자도 있어 드디어 지금은 서로 소송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 대명률에는 처가 있는데도 첨을 처로 삼은 자는 장 90대에 원래대로 바루고,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얻은 자는 장 90대에 이이(離異)한다고 했습니다(태종 13년 3월 10일).

‘부부가 인륜의 근본’[夫婦人倫之本]이라는 취지는 고대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유교의 보편적인 부부관이다.<sup>7</sup> 처(妻) 또는 부(婦)는 유교의 가족 구

5 조선의 건국 주체들이 풍속의 정화와 사회 질서의 차원에서 혼인에 주목한 것은 明 건국 기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명태조 주원장은 즉위 초에 元末의 혼란스러운 사회 풍속을 단속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혼인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였다(『明太祖實錄』洪武元年 12月 7日). 명대의 혼인제도는 一夫一妻의 聘娶婚이다(『대명률직해』제6권, 「戶律·婚姻」).

6 『태종실록』3년(1403) 11월 18일.

7 『예기』에서는 “예의 근본은 혼인에 있다.”[禮本乎昏]고 하고, 『소학』은 “부부는 인륜의 시작[夫婦人倫之始]”이라고 한다. 『중용』은 “군자의 도는 부부에 단서가 있다.”[造端乎夫婦]고 하고, 『순자』는 “부부의 도는 바르지 않을 수 없으니 군신·부자의 근본이다.”[夫婦之道, 不可不正也, 君臣父子之本也]라고 한다.

성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권위와 의무를 가진 배우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남편[夫]과 아내[婦]는 일대일(一對一)의 관계로서 일부일처(一夫一妻)만이 용납된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청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아내가 있을 수 있다. 조선 건국기의 유학 지식인들이 보기에도 고려의 혼속은 처와 처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새로운 가족에서는 처첩의 구별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남성의 배우자로서 처 또는 청은 한자의 원형인 갑골문에 나오는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 기원전 11세기 상족(商族)이 사용한 청의 글자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왕의 배우자로 처(妻)와 동의어라는 점은 공통된 견해다.<sup>8</sup> 여성 배우자를 가리키던 청과 처가 이후 역사적 전개를 따라 분화되고 위계화하는데, 무엇보다 가족질서와 가족관계를 부계중심으로 설계한 종법제의 발전과 함께한다. 이 종법제에 의해 가족 관련 용어들이 가부장의 권리와 편의를 확보하는 쪽으로 전개된 것은 근대이전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사회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혼인형태나 친족에 대한 호칭의 분화는 가족제도 전개를 나타내는 유력한 지표가 되는데, 청의 가족적 사회적 지위는 유교 가부장제의 ‘발전’과 확대의 정도에 의해 좌우되었다.<sup>9</sup>

예컨대 한대(漢代, B.C. 202~A.D. 220) 종법적 전제군주제하의 지식인들은 문자에 담긴 자의(字義)를 규명하면서 처(妻)와 청(妾)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한다. 전한의 유학자 동중서(기원전 176~104), 후한의 문자학자 허신(58~148), 후한의 경학가 정현(127~200) 등은 ‘처는 남편과 똑같은[가지런한] 자’로 정의하고 ‘청은 때로 만나 사랑[성교]을 하는 자’로 규정하였다.<sup>10</sup> 즉

<sup>8</sup> 杜芳琴(1988), 『女性觀念的衍變』, 河南人民出版社, p. 19; 이숙인(2005),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도서출판 여이연, .

<sup>9</sup> 조선사회 서열차대법의 원인을 구명한 김두현은 ‘예교 영향설’ 즉 유교를 국교로 함으로서 종법제의 치첩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보았다[金斗憲(1969), pp. 292~293].

<sup>10</sup> “妻婦與夫齊者也.”(『說文解字』「女部」); “妻者, 齊也, 與夫齊體。”(『白虎通』「嫁娶」, 『毛詩』「十月之交」鄭玄注) “妾者, 接也。以時接見也。”(『白虎通』「嫁娶」) “妾接也。以賤見接幸也。”(劉熙, 「釋名」)

부처(夫妻)는 동등한 관계지만 첨은 접견이나 접행(接幸)의 용도로 정의한다.<sup>11</sup>

조선 건국의 설계자들은 유교 경전(經傳)의 처첩관(妻妾觀)을 이념적 모델로 삼고 대명률(大明律)을 형정(刑政)의 모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이 추진한 처첩의 제도화란 고려시대의 혼인 유습인 다처제를 ‘예무이적’(禮無二嫡)의 유교적 혼인으로 개정한다는 취지다. 일부다처 또는 중혼(重婚)의 혼속은 조선 초기에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이성계의 부친 이자춘은 이씨·최씨·김씨의 3처를 함께 두었는데, 이성계는 두 번째 최씨 소생이다. 이성계 자신도 한씨·강씨 두 쳐를 동시에 두었다. 한씨 소생의 이방원이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강씨가 자신에게 계모가 되는지 서모가 되는지를 신하에게 문의한 것<sup>12</sup>을 보면 당시에도 처첩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처첩분간의 법이 발호되는데, “태종 13년 3월 11일 이후부터 유처취처자(有妻娶妻者)는 엄격히 징계하고 이이(離異)하게 한다.”<sup>13</sup>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처첩을 구분할 것인가. 태종 14년에는 선처(先妻)와 후처(後妻)의 자식들이 각기 적자임을 주장할 경우 그 판결 기준을 정했다. 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선처에 우선권이 있지만, 후처가 더 충실하게 부부의 도를 행했을 경우 선후로 논하지 말고 실상을 조사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또 혼서(婚書)의 유무와 성례(成禮)의 여부에 분간의 기준을 둘 경우 세월이 오래 되면 제대로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후로 논하지 말고 종신토록 동거한 자에게 치의 작위를 준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선처와 후처 안에서 은의(恩義)의 후박(厚薄)을 분간하여 정한다.”(태종 14년

<sup>11</sup> 처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법령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妻는 齊이니 남편과 한 몸이 되는 사람이고, 妻은 接이니 겨우 접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귀함과 천함이 본래 정해진 분수가 있어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처를 첨으로 삼는 자는 장 1백이다.”(『大明律釋義』 권6 4장)

<sup>12</sup> 『태종실록』 16년(1416) 8월 21일.

<sup>13</sup> 『태종실록』 14년(1414) 6월 20일.

6월 20일)라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된 처첩분간의 기준과 원칙은 제도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태종 17년에는 처첩분간과 그 소생의 적서분간 그리고 상속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다음의 다섯 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다.<sup>14</sup>

- ① 선처·후처의 은의(恩義)가 깊고 얕은 것, 벼렸거나 별거한 일이 있고 없었던 것, 동거(同居)와 동거하지 않은 것을 분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② 후처로서 종신�록 동거한 자로 부도(婦道)에 결함이 없는 자에게 작첩(爵牒)과 전지(田地)를 주고 노비는 두 처의 자식들에게 고루 나누어 준다.
- ③ 이혼했다가 다시 합한 선처가 종신한 경우 작첩과 전지를 주고, 노비는 두 처의 자식들에게 고루 나누어 준다.
- ④ 삼처(三妻)를 함께 둔 자는 선후를 논할 것 없이 종신�록 동거한 자에게 작첩과 전지를 주고, 노비는 세 아내의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 ⑤ 태종 13년 3월 11일 이후에 유처취처(有妻娶妻)는 엄히 금하여 이혼시킨다.

여기서 처첩을 구분하는 기준을 ‘은의(恩義)의 후박(厚薄)’에 둔 것에 대해 유교적 관료지식인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정(情)의 깊이’에 따라 적실(嫡室)을 정하다는 것은 ‘삼강’(三綱)의 으뜸이어야 할 부부를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교 혼인의 대원칙인 ‘이성지합(二姓之合: 집안과 집안의 혼인)이 아닌 당사자의 애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세종 16년에는 처첩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중국에는 없는 적첩 구분을 우리나라만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하지만 처첩 문제는 아버지를 계

---

14 『태종실록』 17년(1417) 2월 23일.

승할 자를 정하는 문제로 확대되며 그들 사이의 위계화는 더 강화되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즉 “적자가 없으면 양첩자(良妾子)를, 양첩자가 없으면 천첩자(嬪妾子)에게 그 조상의 덕을 이어받도록 한” 것이다.<sup>15</sup> 적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첨자에게도 승중의 자격이 주어진 것인데, 후기로 가면 첨자의 계승권은 아예 배제되고 양자로 대체하는 방향이었다.

처첩의 제도화는 신유학적 가족 개조라는 이념적인 문제보다 가족 내부의 권리와 재산을 계승할 자를 정하는 문제 즉 정치 경제적 분배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서얼차대의 기원을 “용렬하고 무식한 자들이 감정을 품고 앙갚음하려는 계책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두는 흐름이 있지만<sup>16</sup> 사실은 계승권과 상속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컸다. 이것은 가부장의 성 욕망을 인정하면서 유교 개념의 가족 질서를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태종 13년, 사간원이 상소를 통해 “적첩 분변은 귀천과 준비를 가리는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sup>17</sup>라고 한 것은 이후 전개될 적서 차별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자녀는 존귀하고 서자녀는 비천하다는, 일종의 신분층을 형성하게 된다. 처첩과 적서의 위상이 정해지자 처첩을 분간하는 일이 국정을 좌우할 의제로 떠오른다.

### 3. 조선전기 처첩분간(分揀)을 위한 쟁송

조선 건국과 함께 처첩의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처첩과 적서를 구분하려는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태종조에 처첩제가 발호되고 50여 년이 지난 세조 11년에는 혼인 구성의 법적 조건을 묻는 쟁송 사건이 일어

15 『세종실록』 16년(1434) 1월 20일.

16 조선시대에는 김조순(1765~1832)과 박지원(1737~1805) 등이 있고[『승정원일기』 고종 14년(1877) 4월 6일] 근대에는 왕실 내부의 특수한 사정으로 본 이상백(1934)이 있다.

17 『태종실록』 13년(1413) 4월 16일.

난다.

대개 첨은 적처와 병립할 수 없고, 비천한 자는 존귀한 이와 겨룰 수 없으며, 적첩의 분수는 천경지위(天經地緯)이니 문란하게 할 수 없다. 근자에 김형(金洞)은 어려서 민씨를 아내로 삼았는데, 후사가 없는 것을 민망히 여겨 도씨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런데 김형은 민씨와 함께 산다. 그렇다면 도씨는 첨이고 그 아들은 서자이다. 그런데 아들 김견이 자신을 적자라고 우긴다(세조 11년 1월 29일).

여기서 쟁점은 아버지 김형이 선처(先妻) 민씨와 이혼을 하고 거처를 분리했는가의 여부다. 그런데 김형은 도씨와 재혼을 했지만 민씨와도 평생 토록 동거한 것이다. 당시 법으로 따지면 두 아내와 함께 산 병처(并妻)가 되므로 나중의 아내 도씨는 첨이 되고 그 소생은 서자가 된다. 하지만 판결은 선처 민씨에게 자식이 없고 도씨가 사족인 점을 들어 도씨를 후처로 논정했다.<sup>18</sup> 기존 혼속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변례를 사용하여 구제하는 쪽으로 판결을 낸 것이다. 본격적인 쟁송은 성종 7년(1475)에 재점화되는데,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두 집의 사례는 15세기 처첩 문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인 홍윤성(1425~1475)은 세조의 즉위를 도와 좌익 공신에 오르고, 영의정 등 오래도록 재상으로 지냈으며 종국에는 인산부원군에 진봉되었다. 그런 홍윤성은 50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7개월 후에 두 처 남씨와 김씨의 적첩을 가르는 쟁송이 조정의 의제로 떠오른다.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왕은 정승이 살았을 때는 가만 있다가 죽고 나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사간원은 ‘강상(綱常)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하여 개별 집안의 문제를 보편 법질서의 차원으로 확대시킨다. ‘홍

<sup>18</sup> 『세조실록』 12년(1466) 6월 13일.

윤성 처첩 쟁송’은 성종 7년(1476) 4월 4일에 시작되어 5, 6차례 조정의 논의를 거쳐 3개월 후인 7월 8일에 왕명에 의해 결론이 나는데, 뒤의 부인 김씨를 후처로 논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 대간(臺諫)의 상소로 홍윤성이 김씨와 혼인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김씨는 첨이라고 한다. 조정의 주요 의제가 된 홍윤성의 아내 김씨의 처첩분간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알려진 바로 홍윤성은 선처(先妻) 남씨에게서 후사를 얻지 못하자 이혼하고 김씨에게 새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다. 이혼하고 재혼한 것은 병처(并妻)가 아니므로 국법에 저촉되지 않을뿐더러 재혼한 여성은 처(妻)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두 처 가운데 남씨는 전처(前妻)가 되고 김씨는 후처(後妻)가 된다. 그러나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는 김씨와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 전처 남씨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았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다. 이는 태종 17년(1417)에 규정된 처첩분간의 기준인 “벼렸거나 별거한 일의 여부, 동거(同居) 여부”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김씨 측은 격식을 갖춰 혼례를 행하였고, 남씨를 내치고 별거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한다. 게다가 외명부의 작첩을 받은 사람은 김씨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홍윤성의 재혼은 후사를 얻고자 한 아버지의 명령이었음을 덧붙인다. 논의에 참여한 영사(領事) 정인지는 이혼과 재혼의 조건으로서의 ‘아비의 명령’은 법률에도 있다고 하였고, 한명회는 김씨 가문이 사족인 점을 들어 처음부터 첨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sup>19</sup> 이에 홍윤성의 아내 김씨가 명부(命婦)로서 궁궐에도 출입했고, 문기(文記)에도 김씨를 후처로 착명한 점, 남씨와 김씨가 문지(門地)가 비슷한 사족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왕명에 의해 김씨는 ‘홍윤성의 후처’로 논정되었다[성종 7년(1476) 7월 8일] 김씨가 후처로 논정되자 대사간 최한정 등은 김씨의 후처 논정을 헌수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는데, 7월 11일부터

<sup>19</sup> 『성종중실록』 7년(1476) 7월 8일.

8월 13일까지 20일 넘게 계속되었다. 홍윤성의 후처 김씨는 10년이 넘어서 야 외명부의 작첩을 돌려받게 된다.<sup>20</sup>

두 번째 사례 황효원(1414~1481)은 홍윤성의 처첩쟁송이 발의된 지 한 달 후에 “황효원이 이혼과 결혼을 멋대로 한 실상”이 보고되면서 쟁론화된다[성종 7년(1476) 5월 2일] 그는 세종조에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고 세조조에 공신에 책록되어 상산군(商山君)을 제수받았다. 황효원은 세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은풍 신씨, 옥구 임씨, 한산 이씨가 그들이다. 쟁송의 대상이 된 아내는 처음에는 세 번째 아내였는데, 후반부에서는 두 번째 아내도 대상이 되었다. 사헌부가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산군(商山君) 황효원은 사리를 아는 대신으로서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처음 아내인 신씨를 무후(無後)하다 하여 버리고, 다시 임씨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또 화목하지 못하다 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씨와 결합했으니 마음대로 이혼하고 결합도 하여 이미 체통이 없이 강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신씨가 죽은 뒤에는 공신 자격으로 하사받은 여비(女婢) 작은조이[小斤召吏]를 첨으로 삼았다가 혼서를 추후 작성하여 다시 처로 삼았습니다(『성종실록』 7년 5월 2일).

이 보고를 받은 왕은 “이씨를 후처로 삼도록 논정(論定) 하라”고 명한다. 이를 시작으로 황효원 가의 처첩 쟁송은 5년 동안 이어지는데, 1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조정 회의에 상정되었다. 황효원 가의 처첩 논정은 쟁점에 따라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황효원의 세 번째 아내 이씨의 후처 논정을 철회하고 첨으로 삼을

---

<sup>20</sup> 『성종실록』 17년(1486) 2월 26일.“이조에 傳旨하여, 인산부원군 홍윤성의 아내 김씨에게 작첩을 주게 했다.”

것을 주장하는 양사(兩司)와 ‘들어주지 않는’ 국왕의 대응이다. 성종 7년 5월 2일에 시작된 이 쟁론은 한 달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황효원의 아내 이씨를 첨으로 논정하라.”(성종 7년 5월 28일)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씨는 첨’이라는 주장은 “난신(亂臣)의 딸을 여종으로 받아 첨으로 삼았다가 방면되자 처로 삼은 경우”라며 강상을 어지럽힌 행위라고 한다. 즉 ‘첨으로 처를 삼은’[以妾爲妻] 죄와 ‘훈신으로 난신의 딸을 처로 삼은 죄’의 두 지점에서 공격한다. 반면 ‘이씨는 처’라는 주장은 이씨는 본래 명족(名族)으로 아비의 죄로 종이 된 경우로 일반적인 노비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후처에서 첨으로 강등되었다.

② 황효원의 두 번째 아내 임씨도 첨으로 논정해야 한다는 사현부의 주장이 새롭게 제기된다. 임씨가 첨으로 논정될 경우 소생 아들 황준경과 황석경은 서자가 되고 부시(赴試)를 통한 관직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세 번째 아내 이씨가 첨으로 논정된 다음날 시작된 두 번째 아내 임씨의 쟁송은 7개 월이 넘도록 끌었지만 결국 ‘임씨는 후처’라는 처음의 논정을 유지하게 되었다.<sup>21</sup> 임씨에 관계된 쟁점은 선처(先妻) 신씨와의 이혼 여부인데, 신씨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예조에서는 확인한 혼서(婚書)와 공신록에 적자로 기록된 두 아들의 정보를 제공했다. 다시 ‘임씨는 첨’이라는 주장은 한성부 장적에서 고쳐 쓴 흔적을 주장하지만 기각되면서 ‘임씨는 처’라는 논정은 유지되었다.

③ 황효원은 첨으로 논정된 이씨를 다시 처로 논쟁해 줄 것을 상소하는데, 첨의 신분으로 산 지 4년 만이다. 후처 임씨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고신이 박탈된 황효원은 그 4년 사이에 직책과 고신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내 이씨의 신분 회복을 호소한 것이다.

신이 홀아비로 있어 배우자를 구하는데 모두 늙었다 하여 응하는 사람

21 『성종실록』 7년 12월 8일.

이 없었습니다. 신의 어미가 한스럽게 여겨 (이씨의) 외조모와 더불어 매작(媒妁)을 통해 혼인이 이루어졌고, 혼례는 정당합니다. (...) 공신은 난신(亂臣)의 딸을 아내 삼을 수 없으니 첨으로 논해야 한다고 합니다. 천한 여자가 공신에게 시집가서 면천한 이가 하나 둘이 아닌데, 유독 신의 아내만 적처에서 강등되어 첨이 되니 신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승음(承蔭)하는 법은 친손에게만 미치고 외손에게는 관계되지 않은 것인데, 신의 자녀는 외조 때문에 의관(衣冠)의 집과 혼인을 맺지 못하게 되니, 일이 궁하고 형세가 절박합니다. 신의 자녀로 하여금 인류에 복귀하여 사족(士族)과 혼인하도록 허락하소서(성종 11년 6월 12일).

왕은 이 상소를 조정의 논의에 붙였다. 대신들은 ‘첨을 처로 삼지 말라’는 경전의 말이나 ‘종과 주인은 부부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씨의 처 논정을 거부한다. 왕은 대간(臺諫)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유기의 딸 이씨를 다시 처로 논정하였다[성종 12년(1481) 7월 17일]. 왕은 법이 중요한 만큼 인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황효원은 아내 이씨가 처로 논정되자 더 이상 문제시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려 사간원 장령 안침(安琛)의 집에 분경(奔競)한 한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은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황효원은 국법을 어긴 죄로 국문을 받게 되고 고신이 추탈되는 곤경에 빠진다. 결국 이유기의 딸인 아내 이씨는 첨으로 논정되었다(성종 12년 9월 6일). 이로부터 13일 후 황효원은 죽음을 맞이한다(성종 12년 9월 19일).

④ 황효원이 죽고 26년 후인 중종 2년(1507)에 ‘황효원 가의 처첨분간 사건’은 딸의 적서를 논하는 의제로 확대되었다.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된 박양(朴良)이 서자라며 사헌부에서 추국을 청한 것이다. 박양은 황효원의 세 번째 아내 이씨의 외손자다. 사헌부의 논리는 아내 이씨가 첨으로 논정되었으니 그녀의 딸 황씨는 서녀가 되고, 황씨가 낳은 아들은 서자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박양은 “서자와 천인은 동·서반직에 제수하지 못하

는 법령”을 어긴 셈이다. 이에 황효원의 사위이자 박양의 부친인 박영문이 상소로 처모가 처첩분쟁에 휘말린 사연과 처모 이씨가 보관해 온 관련 자료 『적첩상고일기초』(嫡妾相考日記草)를 제출한다(중종 2년 윤1월 6일). 황효원의 아내이자 박영문의 처모 이씨는 앞에서 본 바 성종조에서 5년에 걸쳐 후처와 첨을 반복하게 되었다. 처모 이씨가 후처로 논정되었을 당시 성종이 “소장(訴狀) 말미에 어필로 써서, 처(妻)라고 논정(論定)”하였는데, 이것으로 박영문 자신은 그녀의 딸 황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처모 이씨가 성종 12년 마지막 논정에서 첨이 되었지만 처모가 후처로 논정되었을 당시 자신과 그 딸 황씨가 혼례를 올린 것이다. 왕은 “박영문의 아내 황씨를 정실로 논정”하였다.<sup>22</sup> 박영문의 상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유기의 딸이자 황효원의 아내인 이씨가 남편 사후 자녀들의 신분을 되찾기 위해 “여러 번 진정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문서가 다 불타서 상고할 근거가 없다.”는 사헌부의 답변이었다.

홍윤성과 황효원의 처첩 논정 사건은 이후 처첩 담론에서 자주 인용되는데, 그것이 남긴 의미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유교의 혼인 가족관을 양반층에 널리 유포함으로써 일종의 교육적인 효과를 남겼다는 점이다. 즉 혼인 성례(成禮)를 준행했는가의 여부<sup>23</sup>나 “첩을 처로 바꿀 수 없다.”<sup>24</sup>거나 처첩의 차별은 ‘바꿀 수 없는 절대 진리’[天經地緯]라는 등의 유교적 혼인문화를 구체적 사건을 통해 습득한 것이다. 두 번째는 법보다 강력한 것은 신분이라는 점이다. 법리(法理)와 정리(情理) 사이에서 주춤거린 것은 논정의 대상이 된 여성의 사족 신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처첩분간의 필요성은 사실 그 소생의 신분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소생 자녀들의 관직 제수나 혼인 대상을 규정하는 문제가 커기 때문이다.

<sup>22</sup> 중종 2년(1507) 2월 1일; 중종 2년(1507) 윤1월 6일의 기사 참조.

<sup>23</sup> “聘則爲妻, 奔則爲妾.”(『禮記』「內則」)

<sup>24</sup> “無以妾爲妻.”(『孟子』「告子」下)

조선전기 처첩분간은 성종대에 가장 활발했고, 중종 대 이후 사라진다. 이는 16세기 이후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여 유교적인 혼인형태로 정비되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sup>25</sup> 성종대의 처첩분간을 거치며 서얼 신분이 독자적인 범주로 확립되었다.

#### 4. 조선후기 예론을 통해 본 첩의 위상

누가 처이고 누가 첩인가를 구별해 내는 것이 조선사회 15세기의 시대 정신이었다면, 처첩분간이 일단락된 16세기 이후에는 첩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17세기 이후 예론이 활성화되면서 가족 내 첩의 지위와 의무 등도 이 맥락에서 담론화된다. 가족 내 첩의 자리는 낮고 불안정 하며 권리 또한 거의 없는 것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의무는 처 못지않게 무거웠다. 첩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오복제(五服制)의 한 항목인 ‘첩이 입는 복(服)’ 즉 첨복도(妾服圖)에 나와 있다. 첩의 상복 의무는 『의례』나 『경국대전』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17세기 이후의 예학가들은 (傳)이나 주(注)의 형태로 예의 담론을 형성해 갔다. 첩에게 부여된 복상의 의무는 남편, 남편의 부모와 남편의 처, 남편의 자녀 등에 관한 것이다.

먼저 ‘첩이 남편을 위해’[妾爲君] 입는 복은 참최(斬衰) 3년이다. 상복 중에서 가장 무거운 복이다. 처가 남편을 위해 입는 복도 첩과 같은 참최다. 반면에 남편이 첩을 위해[君爲妾] 입는 복은 자식의 유무에 따라 다른데, 첩에게 자식이 있으면 남편은 첩을 위해 3개월 시마복(緒麻服)을 입고 자식이 없으면 입지 않는다.<sup>26</sup> 반면 ‘처에 대한 남편의 복’[夫爲妻]은 1년 기년복이다. 남편에 대한 첩의 복상 의무는 첩 일방향인 것에 비해 처의 경우는 3년

<sup>25</sup> 배재홍(1992).

<sup>26</sup> “士妾有子而爲之縗，無子則已。”(『喪服小記』); “君爲妾縗”(『상변통고』), 『喪禮四箋』14.

과 1년이라는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적이다.

여기서 청이 남편을 지칭하는 예학적 호칭 ‘군’(君)과 남편의 정실을 지칭하는 ‘여군’(女君)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김장생(1548~1631)은 청과 남편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는 데서 이유를 찾는다. “청은 신랑을 부(夫)로 호칭할 수 없기에 더 높이는 ‘군’으로 이름한 것이다. 선비의 몸에 임금[君]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으나 청이 남편을 높이는 데는 신하가 임금을 높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sup>27</sup> 유장원(1724~1796)은 “청(妾)이 남편을 군(君)이라 한 것은 자신과 일체(一體)가 되지 못한 존재라는 뜻으로 높여 부른 것이다.”<sup>28</sup>라고 한다.

다음은 ‘청이 남편의 부모를 위해’[妾爲君之父母] 입는 복은 기년(朞年)이다. 『의례』(儀禮)에는 청과 처는 동일하게 남편의 부모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경세(1563~1633)는 “오늘날[17세기 초] 며느리는 시부모 상에 참좌와 자좌를 입고 있으니 청도 정실과 동일하게 입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 김장생도 동의하였다.<sup>29</sup> 이로 볼 때 『의례』와 『경국대전』에 기년복으로 규정된 남편 부모에 대한 청의 복상이 17세기 이후에는 시부 참좌와 시모 자좌로 더 무겁게 매겨진 것이다. 한편 청은 시부모에게 받는 복(服)은 없는 반면 처는 시부모로부터 기년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처첩 상호간의 복상 의무는 어떤가. ‘청이 정실을 위해’[妾爲女君] 입는 복은 기년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의례』에는 청이 여군[정실]을 섬기는 것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18세기의 유장원은 『상변통고』에서 “이제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하여 3년복을 입으니, 청이 여군을 위해서도 시어머니에 대한 것처럼 가복(加服)해야 할 듯하다.”라는 의견을 낸다. 반면에 정실은 청에 대한 복의 의무가 없다[女君爲妾

27 김장생, 『사계전서』 27, 『가례집람』 「상례(喪禮)·성복(成服)」.

28 유장원, 『상변통고』 11, 「상례(喪禮)·청서복(妾庶服)」.

29 송준길이 김장생에게 편지로 질문하며 정경세(1563~1633)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다(『동춘당별집』 권2, 「上沙溪先生」).

無服]. 처와 첨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준한다는 것이다. 또 일방적인 의무만 주어진 첨에게 조선후기의 예설은 중국이나 조선전기의 『경국대전』보다 그 의무를 기중시키는 방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첨의 복상 의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첨은 처[정실]의 일가를 위해 상복을 입는다.”[妾爲女君之黨]라고 하고 “정실이 죽었더라도 첨은 정실 일가의 복을 입는다.”[女君雖沒妾猶服女君之黨]라고 한다. ‘다른 사람을 따라 입는 복’[從服者]의 주(註)에는 “첨은 여군(女君)의 친속에 대해 자신의 친속처럼 여기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김장생은 여군을 따라서 그 일가(一家)의 상복까지 입어야 한다는 말은 『의례』에 없고 그 출처도 알수 없다고 한다.<sup>30</sup> 같은 맥락에서 “첨(妾)이 여군(女君)의 족당(族黨)에 대해 상복을 입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민이승의 질문에 대해 윤증(1629~1712)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족당에 대한 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정도의 답변에 그친다.<sup>31</sup> 이에 대해 임성주(1711~1788)는 “『가례』와 『상례비요』에서 말하지 않았으니 첨가해서 써 넣어야 할 듯하다.”<sup>32</sup>라고 한다. 다시 말해 후기로 갈수록 첨에 대한 의무를 무겁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면 첨과 남편의 아들에 대한 상복 의무는 어떤가. 첨은 남편의 장자(長子)를 위해 3년 자최복을 입고,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등 가족 안의 모든 관계에 대한 첨의 의무를 매우 촘촘히 부여해 놓았다. 첨으로서 집안의 살림을 주간한 것에 더하여 적자(嫡子)를 보살피며 기른 은혜가 있는 경우, 첨에 대한 상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이현일(1627~1704)은 말한다. “복(服)을 입어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 또 신주는 호칭을 정하기 어려우니 논의를 내기 어렵다.”<sup>33</sup> 집안에 큰

30 『사계전서』 16, 「경서변의(經書辨疑)」.

31 『명재유고』 19, 「與閔彥暉」(1693년).

32 『녹문집』 14, 「경의(經義)·의례(儀禮)」.

33 『갈암집』, 「속집」 2.

기여를 한 첨의 경우 섭여군(攝女君)이라 하여 예외적인 대우를 하던 예적 전통에 대해 영남 예학을 대변하는 이현일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첨의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행할 제사 규정을 예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송준길(1606~1672)과 김장생의 대화는 첨이 그 소생 아들로부터 받아야 할 예우를 정한 것이다. 송준길이 “적모의 아들이 없어 서모의 아들이 제사를 주관하면 그 어머니를 적모 곁에 부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명대(明代)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을 인용하자 김장생은 “구씨의 설은 예에 크게 어긋났다.”라고 한다. 김장생에 의하면 첨모와 적모를 나란히 배치할 수 없고, 서모의 신주는 사당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사실(私室)에서 따로 제사하는 게 맞다.<sup>34</sup> 다시 말해 첨의 아들이 제사 상속자가 되었더라도 그 모친은 가문의 중심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조선후기 예학자들의 판단이다. 한편 송시열이 “첨자로서 승적(承嫡)한 자는 누구를 외조부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묻자 박세채는 “적모의 아버지를 외조부로 삼아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둘은 의견이 같음을 확인한다.<sup>35</sup> 윤증은 영남 유생이 상소에서 “정(正)은 적처(嫡妻)의 아들을 말한 것이고 부정(不正)은 첨(妾)의 아들을 말한 것”이라는 부분을 비판하며 적자(嫡子)를 귀하게 여기고 서자(庶子)를 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풍속에서 특히 심하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sup>36</sup>

반복적인 실행이 특징인 의례는 일상의 삶과 그 관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조선후기의 예론은 첨은 남편을 군주 모시듯 하고, 정실을 후비 모시듯 하며 첨 스스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34 『동춘당집별집』 2, 「上沙溪先生」.

35 『송자대전』 부록 제18권.

36 윤증, 「호서 유생을 대신하여 예를 논한 상소」, 『명재유고』 31.

## 5. 세 유형의 첹

조선시대 법 제정의 전범이 되었던 『대명률』에는 “나이가 40 이상이지만 아들이 있거나, 아들은 없으나 나이가 40이 되지 않았으면 모두 첹을 맞이할 수 없다.”<sup>37</sup>라고 했다. 첹을 들이는 목적을 후사를 엊기 위한 데 둔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 양반 사대부의 문집이나 일기 등의 개인 기록을 보면 첹은 후사를 엊기 위한 것에 국한되지 않았다. 자식을 엊기 위한 첹 외에 가사 관리나 주부 역할을 목적으로 한 첹이 있고, 성과 애정 등 종욕(縱欲)의 대상으로 들인 첹이 있다. 여기서는 첹을 들이는 목적을 세 유형으로 나누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는가에 따른 차이로서 둘 이상의 목적을 함께 가진 경우이거나 세 유형의 범주에 들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양반 남성의 문학자료에 나타나는 첹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나 혼인가족의 도덕적 이념을 통해 첹을 지나치게 천시하는 풍조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첹을 그 시대 삶의 한 유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자식을 엊기 위해 첹을 들인 경우다. 정실 부인이 생존해 있으면서 자식이 없는 경우 후사(後嗣)를 목적으로 첹을 들인 경우가 있다. 혼인과 이혼이 엄격하게 규제된 사회에서 정실에서 자식을 보지 못했을 때 첹은 가장 쉬운 선택지가 되었다. 특히 종자(宗子)가 아닐 경우 조상을 이어야 할 부담이 없는 가운데 서자지만 ‘나’의 생물학적 후사를 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이(1536~1584)와 남이웅(1575~1648)을 들 수 있다.

이이는 부인 노씨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자 두 명의 측실을 맞아 2남 1녀를 엊는다. 율곡 39세(1574) 때 장남 경림(景臨)을 엊었고, 44세(1579) 때 차남 경정(景鼎)을 엊었다.<sup>38</sup> 그의 득남이 인생 말년에 이루어진 것을 볼

<sup>37</sup> “謂年四十而有子，雖無子而年未四十，均之不許娶妾也”，『大明律集解附例』, p. 655.

<sup>38</sup> 『율곡전서』 33, 34, 「율곡선생연보」.

때 측실은 후사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율곡행장」에는 율곡의 부인 노씨가 “첨들을 은혜로 대우하며 친자매처럼 여겼다.”<sup>39</sup>라고 했는데, 두 첨 경주 이씨 이양(李暘)의 서녀와 전주 김씨를 가리킨다. 율곡은 서장자 경립을 자신의 후사로 지정하였다. 남평조씨는 17세에 남이옹(1575~1648)과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13세와 25세의 나이로 모두 세상을 떠났다. 조씨는 1636년 겨울 병자년의 난리를 만나 충청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일기를 남겼다. 이후 붙여진 이름이 『병자일기』인데, 여기서 피난 생활 중에 남편의 첨 천남어미가 출산하는 장면이 나온다. 남이옹은 나이 63세에 측실에서 아이를 얻은 것인데, 당시 그는 소현세자를 보필 하며 심양에 억류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정실이 생존하므로 후처를 얻을 수는 없지만 첨을 통해 후사를 남기고자 한 것이다.<sup>40</sup>

최한기(1803~1879)는 첨이란 생자(生子)을 위한 용도임을 분명히 하였다. “처와 첨을 얻는 것은 산육(產育)을 위해서이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불가불 첨을 얻어야 하니 이는 산육을 위해서이다.”<sup>41</sup> 하지만 욕망의 관리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유교사회에서 첨을 들이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후사를 얻기 위해 첨을 들인다는 말은 남편 자신을 합리화하는 수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sup>42</sup>

다음은 생활의 관리와 수발을 위해 첨을 들인 경우다. 처가 생존해 있지만 주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노년에 들어 사별하여 대등한 신분에서 처를 맞이할 수 없는 경우 첨을 선택했다. 김집(1574~1656)과 정약용(1762~1836)의 부친 정재원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김집의 경우

<sup>39</sup> 『율곡전서』 35, 「행장」.

<sup>40</sup> 남평조씨, 『丙子日記』 “갓난 아이를 보니 얼굴이 영감을 닮은 곳이 많다.”(1637년 4월 10일)

<sup>41</sup> 최한기, 『신기통』 3, 「生通」.

<sup>42</sup> 중국 東晉의 謝安(320~385)의 일화는 첨을 합리화하는 남성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첨을 반대하는 아내를 설득하는 논리로 많은 자식 얻기를 염원한 『시경』「螽斯」편을 인용하자 아내는 곧 그 시는 남자가 썼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편다면 일축했다.

는 후사도 중요하지만 주부 역할을 할 아내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부인 유씨는 좌의정 유홍(劉泓)의 딸로 고질병이 있어 주부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김집은 23세(1596) 때 율곡의 서녀 이씨를 청으로 맞아들인다. 이씨는 현명하고 정숙하여 실제 안살림을 도맡아 하였고, 시아버지 김장생을 30여 년 봉양하여 효순(孝順)하다는 평을 받았다.<sup>43</sup> 송시열은 김집의 묘지명에서 측실 이씨를 “영민한 까닭에 김집의 처를 대신하여 가정의 대소사를 맡았고, 김집의 두 아들과 두 딸 모두 그녀의 소생”<sup>44</sup>이라고 했다.

정약용의 부친 정재원(1730~1790)은 44세 때 20세의 김씨(1754~1813)를 측실로 맞이했다. 41세에 부인 윤씨와 사별한 정재원은 처녀 황씨를 측실로 삼는 데 오래지 않아 그녀가 요사하자 중인 신분의 김씨를 다시 선택한 것이다. 노년에 든 정재원은 제도적 제약이 많은 처보다는 청을 들여 가사를 돌보고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한 것이다. 다산은 이러한 서모 김씨의 묘지명을 썼다. “우리 아버지를 정성스럽고 부지런하게 섬기되 20년을 하루같이 하매 아버지가 편안하였으니, 그 공을 기록할 만하다. 처음 우리 집에 올 때 용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었다.” 김씨는 다산이 장가 들 때까지 의복과 빨래 등을 도맡아 하며 보살펴 주었다고 한다.<sup>45</sup> 서모 김씨와 아버지의 나이차는 24세인데, 사족의 청으로 가는 여성들은 남자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경우가 대다수였다.<sup>46</sup> 가사를 관리하고 정실 소생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서모라는 이름의 청, 개별 가족은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재평가되어야 할 존재다.

세 번째 유형은 성과 애정을 위해 들인 청이다. 정실 부인이 생존해 있

<sup>43</sup> 『신독재전서』 15, 「연보」上; 송준길, 『신독재전서』 19, 「慎獨齋謚狀」.

<sup>44</sup> 『송자대전』 182, 「慎獨齋金先生墓誌銘并序」.

<sup>45</sup> 정약용, 『다산시문집』 16, 「서모김씨묘지명(庶母金氏墓誌銘)」.

<sup>46</sup> 조선후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성부 호적에 의하면 청과 호주의 나이 차가 통상 10세 이상이고 21세 이상이거나 최고 52세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조은·조성윤(2004), 「한말 서울지역 청의 준제양식」 『사회와 역사』 65호].

고 후사로 삼을 자식이 있는데도 첨을 들인 경우다. 후사를 걱정할 일도 없고 가사를 담당할 주부를 구할 일도 없는 상황의 축첩은 대개 종욕(縱欲) 또는 탐욕이 작용한 것이다. 당나라 이백(李白)의 시 「첩박명」(妾薄命)은 ‘복 없고 팔자 사나운’ 첨의 신세를 노래한 것으로 “지극하던 사랑이 시들해지니 절투가 깊어져 정마저 도리어 떨어졌네.”라고 한다. 첨을 성애적 존재로 본 이백의 시는 우리나라 문인들도 즐겨 인용하는데, 첨에 성적 환타지를 결부시키는 방식이다. 이백의 시 「첩박명」의 운을 사용한 이곡(1298~1351)은 “두 뺨이 붉은 옥소반과 같아서”, “미움과 사랑은 무상한 것”, “아침의 연인이 저녁에 타인이 된다.”라는 등의 언어로 첨의 모습을 그려 낸다.<sup>47</sup> 낭만화된 이 유형의 첨은 권력이나 부를 가진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성과 결부된 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시발(1569~1626)을 들 수 있다. 그는 19세에 동갑인 여홍 민씨와 혼인을 하고 2년 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서울에 거처를 꾸린다.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30세에 첨을 얻는데, 축실은 이이의 질녀이자 이우(1542~1609)의 서녀인 덕수이씨(1584~1609)다. 아내와의 사이에 딸이 있었고 아들은 아직 얻지 못했지만 30세로 충분히 후사를 얻을 수 있는 나이다. 참고로 후사를 얻기 위한 축첩은 『대명률』 등의 법전에서도 명시한 바 4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시발이 직접 쓴 <축실을 위한 제문>에는 이씨를 첨으로 맞게 된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자네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잠못 드는 날을 보내기를 반년, 결국 자네 부모의 허락을 얻어 내었지. 혼인한 후에 자네의 지행(志行)을 보니 그 총명하고 명석한 재능과 단정하고 정숙한 자질이 과연 일반적인 규수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 자네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었다. (...) 경사(經史)에 박식하고 거문고와 바둑 실력이 뛰어났으며 자수와 서화에도 능

<sup>47</sup> 이곡, 『稼亭集』 14, 「妾薄命-用太白韻」.

했다. 내 정이 자네에게 특별히 깊은 것은 어찌 재색의 아름다움에만 있겠는가.<sup>48</sup>

이시발이 측실을 ‘후사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 것은 유교 관료로서의 자기 합리화라 할 수 있다. 이시발은 16세 연하의 측실에게서 아들을 경충(慶忠)을 얻는데, 같은 해에 동갑의 정실 민씨는 아들 경연(慶衍)을 낳는다.<sup>49</sup> 여기에서 보듯 그가 첨을 들인 것은 뛰어난 자질과 미모를 갖춘 젊은 여성에 대한 욕망임을 부정할 수 없다.

첨을 얻는 것은 국법으로 용인된 것이지만 ‘욕망 절제’[節慾]라는 유학 지식인의 정체성에는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유희준(1513~1577)은 지인의 혼사에 참석했다가 신랑신부를 위해 촛불을 밝혀 줄 것을 부탁받고는 사양하는데, 그날 일기에 그 이유를 썼다. “나는 첨을 둔 사람이라 사양했다.[余辭以有妾]<sup>50</sup> 이처럼 성애의 대상으로 첨을 들인 경우 뜻뜻하지 못했는지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이 뒤따랐다. 첨을 들이는 양반이 근대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주자학적 이념에 의한 부정적 인식과 양반의 경제력 약화를 들고 있다.<sup>51</sup> 축첩이 성애와 결부된 경우를 말한 것이다.

48 이시발, 『벽오유고』 5, 「祭側室文」.

49 『벽오유고』 연보, 『경주이씨세보』 참조.

50 유희준, 『미암일기초』 5, 병자년(1576) 10월 9일.

51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첨으로 표시된 경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678년에는 전체 2117호(양반호 315호 포함)의 1%에 해당하는 22호가 첨을 둔 호였고, 100년 후인 1789년에는 전체 2683호(양반호 908호)의 0.4%에 해당하는 11호가 첨을 둔 호였다[정지영(2004), 「조선 후기의 첨과 가족 질서: 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 6. 서녀와 첨의 자기 인식

첨이나 서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자기 목소리나 자기 서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서술된 경우다. 처[정실]나 적녀(嫡女)라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선시대의 첨과 서녀는 주변화되고 은폐된 존재의 특성상 더 가려질 수밖에 없었다.<sup>52</sup> 일기나 편지로 자기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던 정실과는 달리 서녀나 첨의 신분이라면 능력이 있더라도 그럴 수 없었다. 특히 정실 소생들은 딸의 혼인 관계나 어머니의 가계(家系)가 양반 남성의 공식적, 비공식적 기록의 필수 항목임으로 이를 통해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적 계보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된 서자는 그 어머니와 외족(外族)의 계보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서자의 생모가 ‘역사’에 드러나는 것은 적형제(嫡兄弟)에 의해 서모(庶母)로 등장하는 경우다. 이러한 맥락에서 첨과 서녀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내기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첨의 딸로 태어나 서녀로 성장하면서 혼처를 정해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분절적이고 과편적인 형태지만 그녀들의 생각을 보여 주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서녀와 적(嫡) 며느리가 위계를 다투는 상황에서 서녀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인조의 서녀 효명옹주와 인조의 적 3남인 인평대군의 부인 오씨 즉 서(庶) 시누이와 적(嫡) 올케가 자리를 정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혼례를 치른 효명옹주는 잔치연에서 임금의 딸인 자신이 오씨보다 상석에 앉아야 함을 주장한다. 반면에 오씨는 적서를 기준으로 할 때 자신이 상석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임금의 명으로 효명옹주가 상석에 앉게 되었다. 이 갈등의 학습을 통해 효종 조에는 가인례(家人禮)를 기준으로 며느리를 딸보다 상석에 앉히는 규례를 마련했다고 한다.<sup>53</sup> 여

<sup>52</sup> 김경미는 서녀를 ‘이중으로 소외된 존재’로 규정한다[김경미(2007)].

<sup>53</sup> 『연려실기술별집』 1, 「국조전고(國朝典故)」.

기서 효명옹주는 과연 서녀라는 인식을 갖고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한 것인가. 그보다는 당시 내명부를 장악한 어머니 조귀인의 권력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오빠의 부인과 대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적서 갈등으로 본 것은 이후의 해석이다. 하지만 서녀의 자기 행위를 보여 주는 귀한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서녀의 경우 예(禮)나 법(法)이 부여한 의무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국왕의 서녀는 왕실 외명부의 호칭과 관련하여 법제화되었는데, “왕의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 하고 “옹주는 국왕의 서녀”라고 하였다.<sup>54</sup> 그리고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품의 품계와 자급을, 옹주에게 장가 든 자는 정2품의 품계와 자급을 제수한다.”<sup>55</sup>라고 하였다. 왕의 딸이라도 후궁[妾] 소생의 서녀는 왕비[妻] 소생의 공주와 차별화되었다. 이렇게 왕실 딸들을 적서에 따라 그 품계를 위계화한 것은 곧 양반가의 생활 문화에 그대로 반영된다. 중종 6년(1511) 임영대군의 서손(庶孫) 희제수 이호(李瑚)는 두 딸의 혼사와 관련하여 분란에 휘말리는데, 적녀와 서녀를 대하는 당시 관행을 보여 준다.

이호는 적녀를 강은(姜灑)에게, 서녀를 윤계(尹溪)에게 시집보내기로 하고 납채까지 행하였다. 두 사윗감은 전도가 유망한 생원이었는데 문별로는 서녀와 혼약한 윤계가 좀 낮았다. 그런데 윤계가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서 자신의 배필을 적녀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장인될 이호는 부득이 이에 응한다. 반면에 배우자를 바꾸어 서녀를 강은에게 보내기로 한다. 이에 강은이 현부에 고발하여 자신의 혼인을 무효화시킨다.<sup>56</sup> 이 사건을 보면 차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16세기 초에는 양반 남성의 정실로 서녀

<sup>54</sup> 『경국대전』「吏典·外命婦」.

<sup>55</sup> 『경세유표』 3, 「天官修制」.

<sup>56</sup> 『중종실록』 6년(1511) 10월 26일. 윤계는 이호의 적녀와 혼인을 하지만 7년이 지난 중종 13년에 호조 정랑 윤계는 남의 아내[강은과 혼약한 적녀를 가리킴]를 빼앗은 죄로 탄핵되고 아내 이씨와 이혼한다.

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후기로 갈수록 서얼이 하나의 신분층을 형성하면서 서녀의 배우자 선택에 제한이 가해진다. 양반의 서녀는 양반 적자의 첨이 되거나 양반 서자의 처가 되는 방식의 혼인으로 일반화되었다.

사실 서녀로 태어나 가족 속에서 성장해 가는 현실은 적서 차별의 제도 및 이념처럼 엄격하지 않았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자식에 대한 애듯함이 앞섰다. 조관빈(1691~1757)은 죽은 서녀를 위한 애사에서 신분의 굴레를 안고 태어난 딸을 안타까워한다. “눈처럼 희고 옥같이 예쁜 너, 아들이 아닌 것이 한스럽고 적녀가 아닌 것이 애석했지. 아비와 딸로 만난 지 겨우 스무 달, 그 태어남이 어찌 우연이고 그 죽음은 어찌 이리 빠른가.”<sup>57</sup> 송시열(1607~1689)도 다섯 살 난 서녀가 죽자 지나치게 슬퍼하며 말한다. “부자는 천륜이니 이해(利害)를 따지는 마음이 있겠는가. 딸아이가 죽은 눈앞의 참통(慘動)은 남녀와 장유의 차이가 있겠는가.”<sup>58</sup> 서녀로 태어난 딸의 처지가 안타까웠을 아버지들이 어찌 기록에만 국한되겠는가. 반면에 자식을 놓고 적서를 따지고 혼인 거래에서 활용 가치를 계산하는 부모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채제공(1720~1799)은 서자 채홍근의 배필로 정약용의 서매(庶妹) 정씨를 맞으며 작성한 혼서에 자식을 향한 늙은 아버지의 염원을 담았다. 그는 적자가 없어 양자로 대를 잇게 했지만 혈육에 대한 정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들의 배우자가 될 서녀 정씨에게 부모로서의 애정을 유감 없이 드러내었다.

저의 서자 홍근(弘謹)은 문장과 재주가 영성하니 매고(枚臯)처럼 아버지의 행적을 이을 수 있을련지요. 하지만 귀택의 서녀(庶女)는 침선을 손수하며 두보(杜甫)의 딸처럼 어머니를 본받은 행실이 일찌감치 알려졌습니다.

57 조관빈, 『悔軒集』 16, 「側出女母愛哀辭」.

58 송시열, 『송자대전』 부록 제17권, 「語錄」.

마침 화목한 가정을 이룰 시기가 되어 혼인을 약속해 주시니 헤쳐럼 얹힌  
오랜 정의가 더욱 친밀해집니다.<sup>59</sup>

정씨는 비록 제도에 의해 서녀로 분류되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한 것이다. 채홍근과 정씨는 서자와 서녀의 신분이지만 그들의 혼인은 당대 최고 가문의 결합이었다. 개별 인간의 능력과 품성은 적자녀와 서자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서자녀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 관계와 교육 및 경제의 지원 정도 그리고 제도와 사회적 시선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서녀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어떻게 기억할까. 시집 간 딸로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적녀나 서녀가 다를 것 같지 않다. 김집의 측실이자 율곡의 서녀인 이씨는 아버지 기일에 직접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아버지 율곡이 평소에 쇠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제찬 준비가 매우 까다로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각자 형세가 다를 수 있기에 “출가한 딸이라도 지방을 가지고 전(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였다.<sup>60</sup> 또 율곡이 쓴 ‘빈집에 관한 일 한 가지’[擯接一事]는 언문으로 번역되어 세상에 유통되었는데, 서녀 이씨가 소장해 온 것이다.<sup>61</sup> 율곡의 서녀가 시집에서 친정 부친의 제사를 지내고 부친의 유적을 간직해 온 것은 딸 또는 서녀라는 의식에 앞서 자식된 도리에 충실했던 것이다.

율곡의 서녀와 사촌간인 옥산 이후의 서녀는 서화(書畫)와 거문고 등 다방면의 재주를 보이며 성장하는데, 당시 관행대로 사대부의 측실이 되었다. 그녀가 친정에 전복을 보내자 아버지 옥산이 감동의 시를 보낸다. “정성으로 말린 전복 늙은이 안주에 제격이라, 마음에 새겼다가 마침내 보내왔구나, 얼마나 입을 즐겁게 하는지.” 사위는 “변변치 못하지만 딸의 마음은 오

<sup>59</sup> 체제공, 『번암집』 59, 「庶子弘謹婚書」.

<sup>60</sup> 송시열, 『송자대전』 57, 「答閔大受」.

<sup>61</sup> 송시열, 『송자대전』 130, 「栗谷別集訂誤」.

로지 부모 봉양에 있습니다.”라고 차운한다.<sup>62</sup> 서녀 이씨와 아버지 옥산이 부녀로서 서로 그리워한 정황은 사위 이시발의 또 다른 글에도 보인다. 측실이 분만하던 날 저녁에 장인의 부음이 당도하는데, 효심이 지극한 그녀가 슬픔으로 몸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그 부친의 부음을 숨겼다는 내용이다.<sup>63</sup>

율곡 가의 두 서녀는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의식보다 ‘훌륭한’ 아버지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양반가의 서녀들은 대개 부계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곤 하는데, 병자호란 시 위기 상황에서 “나는 돌아가신 이원익 상국(相國)의 딸이오.”라고 외치며 목을 그어 자결한 서녀 이씨도 그 가운데 하나다.<sup>64</sup> 다른 한편에는 그녀들은 첨 소생이라는 소외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옥산 이후의 서녀는 자신의 소생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한 것 같다. 그녀는 서자로서 세상을 살아야 할 아들들을 피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데 최립(1539~1612)의 애도사가 말해 준다. “아직 젊은 나이로 세상 하직하던 날, 반소(班昭)처럼 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지.”<sup>65</sup> 죽는 그날에도 두 아들을 가르쳤던 것인데, 자신의 문제의식을 서자가 된 아들에게 투영한 것이다. 남편 이시발이 측실 이씨를 위한 제문에서 ‘남겨진 아이들을 잘 길러내겠다’고 다짐한 것은 그녀가 평소 무엇을 염려했는지를 짐작케 한다.<sup>66</sup> 서녀 이씨가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중심을 부정하기보다 스스로 노력하여 중심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조선이 건국되고 400여 년이 흐른 18세기 말, 경상·충청·전라의 유생

<sup>62</sup> 이시발, 『벽오유고』 5, 「答玉山求石決明於女」, “精乾石決明, 老子宜佐酒, 留心須寄來, 此物偏悅口。”(原韻) “海月百箇團, 秋露一壺酒, 區區小女心, 養志兼養口。”(次韻)

<sup>63</sup> 이시발, 『벽오유고』 5, 「祭側室文」.

<sup>64</sup> 『동국여지지』 1, 「京都」.

<sup>65</sup> 최립, 『간이집』 8 「主人使相副室李挽詞」.

<sup>66</sup> 어머니인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서자가 된 이씨의 두 아들 경충과 경선은 각각 무과와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팔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적자의 자격을 얻는다(『경주이씨세보』 참조).

3,272인은 처첩 및 적서의 차별을 비판하는 상소를 제출한다. 그들은 “작위(爵位)의 분별은 조정에서만 써야 하고, 적서의 분별은 한 집안에서만 써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얼들은 한 집안뿐 아니라 한 고을 한 나라 전체에 적용되어 한 나라의 백성 절반이 금고를 당해 왔다. 서얼들이 연대하며 집단의 힘으로 사회를 향해 문제를 던진 것이다.<sup>67</sup> 그런데 이 운동의 주체가 된 서얼은 “아버지를 계승해야 하는 아들” 즉 서얼 남자들이다. 그렇다면 서얼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남성들과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가, 자기 인식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 7. 맷음말

첩은 측실, 부실, 소실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시대 가족문화의 한 축을 이루어 왔다. 가족이면서 낮고 천한 신분을 부여받은, 여성 삶의 한 유형이었던 첩은 근대 직전까지 제도적으로 승인된 존재였다. 첩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서얼이라는 소생 자녀들의 비율로 추산할 뿐이다. 즉 18세기의 영조는 서얼이 나라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고, 정조는 서류(庶類)를 빼면 일국의 절반을 잊는 것이라고 했다.<sup>68</sup> 첩의 신분인 여성의 수가 인구 수를 좌우할 만큼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서자 서녀 가운데 부모의 재능이나 자질을 물려받은 자가 없을 수 없지만 역사는 그들의 존재를 숨겨 왔다. 조선에서는 약간의 벼슬이나 학문만 있어도 그것을 기반으로 자녀들의 앞날이 열렸건만, 친가 외가가 아무리 대단해도 서녀 서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선시대 기억의 계보에서 서자

<sup>67</sup> 『정조실록』 2년(1778) 8월 1일.

<sup>68</sup> 『순조실록』 23년(1823) 7월 25일.

서녀는 분명 거추장스런 존재였다. 처첩의 제도는 여성의 심리적 구조와 문화적 습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여성들 사이의 연대를 방해한 것도 그중 하나다. 처와 첨의 화목을 부덕(婦德)으로 강조한 것은 처첩제의 근원적인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별의 역사를 확인하고 성찰하는 맥락에서 첨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조선전기 15세기는 신유학적 가족 이념에 따라 처첩 및 적서의 제도화가 추진되는데, ‘예무이적’(禮無二嫡)의 유교 혼인관을 따라 일처(一妻) 외는 모두 첨으로 논정하는 ‘처첩분간법’이 발호되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 누리던 동등한 권리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강등되거나 박탈되는 법이었다. 가진 것이 많은 귀족이나 사족의 경우 특히 민감하여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처첩분간의 기준을 정하는데 혼서(婚書)의 유무와 성례(成禮)의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이것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 ‘은의(恩義)의 후박(厚薄)’을 기준으로 삼는 등 처첩분간을 위한 논리와 담론이 개발되었다. 처첩의 제도화는 신유학적 가족 개조라는 이념적인 문제보다 가족 내부의 권리와 재산을 계승할 자를 정하는 문제 즉 정치 경제적 분배 문제가 더 커졌을 것이다.

처첩분간이 일단락된 16세기 이후에는 첨 담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첨의 지위에 관한 예학적 해석이 펼쳐진다. 가족 내 첨의 자리는 낮고 불안정하며 권리 또한 거의 없는 것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의무는 쳐 못지않게 무거웠는데, ‘첨이 입는 복(服)’ 즉 첨복도(妾服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첨에게 부여된 복상의 의무는 남편, 남편의 부모와 남편의 처, 남편의 자녀 등에 관한 것이다. 첨에 관한 예학적 담론은 『의례』와 『경국대전』 등의 기준 예법에 근거하지만 조선후기는 첨의 의무를 가중시키고 첨의 지위를 강등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각종 예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현실 가족으로 들어가 첨을 들이는 목적을 세 유형으로 나누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폈다. 첫 번째 유형은 ‘나’의 생물학적 자식, 생자(生子)에 목적을 둔 첩이다. 두 번째 유형은 처가 생존해 있지만 주부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노년에 들어 사별하여 대등한 신분에서 처를 맞이할 수 없는 경우 첩이 선택되는데, 이 경우를 ‘생활의 관리와 수발’을 위한 첩으로 보았다. 세 번째 유형은 정설이 생존해 있고 후사로 삼을 자식이 있는데도 첩을 들이는 경우다. 앞의 두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축첩은 권력이나 부를 가진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유형, 바로 낭만화된 첩, 성과 결부된 경우다.

끝으로 서녀와 첩의 자기 인식에 주목했다. 첩이나 서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자기 목소리나 자기 서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서술되었을 경우다. 직접적인 자료라기보다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유추하는 방식으로 그녀들의 자기 인식을 살펴보았다. 사실 서녀로 태어나 가족 속에서 성장해 가는 현실은 적서차별의 제도와 이념과 전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 서녀로 태어난 운명을 애달프게 여기는 부모와 그 부모를 섬기고 기억하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서녀, 현실 속의 그녀들의 삶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양반가 서녀들은 중심을 비판하거나 해체하기보다 각고의 노력으로 중심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매우 제한적인 행위를 보여 주었다. 조선시대 여성 삶의 한 유형인 서녀와 첩은 여성과 가족 연구뿐 아니라 여성 주변화의 기제와 논리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주제다.

## 참고문헌

- 『예기』, 『맹자』, 『백호통』, 『설문해자』, 『대명률직해』, 『태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승정원일기』, 『경국대전』, 『동국여지지』, 『경주이씨세보』  
김장생, 『사계전서』 16, 27

- 김집, 『신독재전서』 15, 19  
 남평조씨, 『丙子日記』  
 송시열, 『송자대전』 57, 130, 182  
 송준길, 『동춘당별집』 권2  
 송준길, 『신독재전서』 16, 19  
 유장원, 『상변통고』 11  
 유희준, 『미암일기초』 5  
 윤증, 『명재유고』 19, 31  
 이곡, 『稼亭集』 14  
 이궁익, 『연려실기술별집』 1  
 이시발, 『벽오유고』 5  
 이이, 『율곡전서』 33, 34, 35  
 이현일, 『갈암집』 「속집」 2  
 임성주, 『녹문집』 14  
 정약용, 『다산시문집』 16  
 정약용, 『경세유표』 3  
 조관빈, 『悔軒集』 16  
 채제공, 『변암집』  
 최립, 『간이집』 8  
 최한기, 『신기통』 3  
 김경미(2007), 「서녀: 가족 속의 경계인, 역사 속의 주변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김두현(1969),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박경(2000), 「朝鮮前期 妻妾秩序 確立에 관한 考察」, 『梨花史學研究』 27.  
 배재홍(1992), 「조선전기 처첩분간과 서얼」, 『대구사학』 41.  
 배재홍(1990), 「朝鮮時代 妻子女의 財產相續과 存在樣態」, 『대구사학』 39집.  
 李相伯(1934), 「庶孽差待의 源源에 대한 一問題」, 『震檀學報』 1.  
 이숙인(2005),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도서출판 여이연.  
 정지영(2004), 「조선 후기의 첨과 가족 질서: 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조은·조성윤(2004), 「한말 서울지역 첨의 존재양식」, 『사회와 역사』 65호.  
 조지민(2016), 「『大明律』 상 범죄와 형벌의 비례: 처첩을 중심으로 한 변형」, 『法史學研究』 53호.  
 杜芳琴(1988), 『女性觀念的衍變』, 河南人民出版社.

**ABSTRACT**

# Concubines and the Daughters of Concubines in the Joseon Dynasty

## Institutions, Discourse, and Self-Perception

Lee, Sookin\*

In the Joseon era, concubines (*cheop*, 妾) and their daughters (*seonyeo*, 庶女) were both family members, but they were excluded or marginalized in terms of family lineage and rights. They embodied the discriminatory system and logic of that era. In *yangban* households, a daughter born to a concubine, a *seonyeo*, would later become a concubine in a cyclical structure. As wives and daughters, they were inseparable. Concubines were further divided into *yangcheop* (良妾) and *cheoncheop* (賤妾), and their offspring were categorized as *seojaneo* (庶子女) and *eoljaneo* (孽子女).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role of concubines, intricately linked to family and social status, as a type of women's life during different periods. In the early Joseon period, as Confucian family ideals intersected with national ideology, everything related to marriage and family entered a new phas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ubine system. Here, concubines were reorganized and redefined according to Confucian family ideals. The cultural origins, institutionalization, and specific legal cases related to concubines and legal disputes over concubine separation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were examined in this study.

---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completion of concubine separation in the 16th century, discussions about concubines in the late Joseon period revolved around the obligations imposed on concubines. The late Joseon's *yeseol* (禮說) reflected the changing contemporary context while incorporating existing ritual norms. It established the Confucian position of concubines and concubine daughters. To understand the reality and aspects of concubines, this study focused on the purpose and types of concubines within specific families. Finally, as peripheral family members, how did concubines and seonyeo perceive themselves? Although *seonyeo* was only mentioned as a process leading to concubinage, fragmented records were collected to clarify the self-perception of concubines and *seonyeo*.

**Keywords** Concubine, Joseon Dynasty, Seonyeo, Institutions, Ritual Discourse

